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장

제 56 호                      2015. 6. 9(화)

## 공 고

-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1
-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7
-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25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 2015-756호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 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다.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의 기능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남원시립도서관 담당자 이지선(전화 : 620-89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06.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 1. 제정이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의 기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06. 11. ~ 2015. 06. 3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종합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행사를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매년 1회 이상 개최하

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 학술행사, 강연회, 경진대회 등

**제4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제5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

**제7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남원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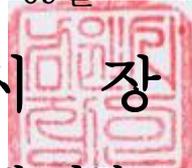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 2015-757호**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 다.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7),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남원시립도서관 담당자 이지선(전화 : 620-89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07.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 1. 제정이유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9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06. 18. ~ 2015. 07. 0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쉬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제2조제4호의 “학교마을도서관” 또한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4. “학교마을도서관”이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위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2.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5. 지방자치 운영 기관 중 다중이용 장소 및 특색있는 시설
  6.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7.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있는 지역 또는 자원봉사회 조직이 가능한 지역
- ②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

무 외 시간에도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지정받기 위해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에서는 관련계획서의 타당성을 조사·선정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10석 이상의 열람석 및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
3. 건물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

③ 작은도서관은 1년에 2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 및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작은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7. 그 밖에 독서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그 밖에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수행)**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4. 낙후된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읍·면지

역은 2명이상, 동지역은 4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학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 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요일은 휴관하며, 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0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예산 운영 및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9. 자료의 이관·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10.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1.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2. 작은도서관 운영 재원 및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립도서관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 관련 학과 교수

2.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3.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서 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5.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제18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

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기증)**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도서관 등록신청서 (제6조 관련)</b>		처리기간
		10일
①도서관의 종 류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병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교도소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p>「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b>도서관 등록변경신청서(제6조 관련)</b>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병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교도소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관	
② 등록 번호	제 호	③ 등록연월일
설립자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	
⑦ 명 칭		
⑧ 소재지	(전화 : )	
⑨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p>「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제6조 관련)		처리기간
		즉시
①도서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작은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도서관 <input type="checkbox"/> 병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교도소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전문도서관	
② 등록 번호	제 호	③ 등록연월일
설 립 자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	
⑦ 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 : )	
⑨ 사 유		
<p>「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 구비서류 :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수수료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없 음

[별지 제5호서식](제6조 관련)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 1. 도서관 명칭 :
- 2. 소재지 :
- 3. 성명 : (생년월일 : )
- 4.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 5. 도서관의 종류 :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제13조 관련)

주 소 ( 학 교 )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본인은 ○ ○ ○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5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0일간입니다.
4. 책을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5 - 35호

##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06월 09일

남 원 시 장

### 1. 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 이익금(잉여금)의 지출(처분)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5조제3호의 ‘배당납부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잉여금의 지출항목에서 어긋나므로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190 / 남원시 도통동 555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20),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063-620-6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을 “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그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이라 함은”을 “수도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급수구역은 남원시”를 “급수구역은 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기타 유사”를 “그 밖의 유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으로 보하도록”을 “국장으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한”을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을 “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로 한다.

제8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남원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남원시조례”를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로, “일반회계와”를 “일반회계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1호 규정”을 “제5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의 규정”을 “호”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금에 대하여는”을 “출자금은”으로, “언제”를 “반게”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특별회계”를 “해당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은 이를”을 “하는 재정지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을 “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의 명”을 “회계명”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을 “법 제27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를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다음년”을 “다음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삭제

제16조제4호 중 “내지 제3호”를 “및 제2호”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을 “법 제40조”로, “언어”를 “받아”로, “내용은 남원 시의”를 “내용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을 “법 제36조”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를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를 “제2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을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국장으  
로-----.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남원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  
-----  
-----  
-범위-----  
-----  
-----  
--.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없으면-----  
-----.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  
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  
다.

제6조(인사) ① -----  
-----공무  
원의-----  
-----.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없으면-----  
-----.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  
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8조-----  
-----  
-----.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제8조(기업관리규정) -----  
-----  
-----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남원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남원시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규정에 따른 경비
2. (생략)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남원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

-----받아야-----.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②-----그 밖에-----.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일반회계가-----.

- 1.-----제5조제1호-----
2. (현행과 같음)
- 3.그 밖에-----

제12조(출자) ① 시-----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생략)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에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  
 -----  
 -----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연-----  
 -----

3. 삭제

4.-----및 제2호  
 -----  
 -----경우에는-----  
 -----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설치·  
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한 중  
요자산의 내용은 남원시의 규칙  
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  
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  
산서
3.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  
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  
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법 제40조-----  
-----받아-----  
-----내용은-----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회계처리상황-----  
-----  
-----붙여야-----.

1. (현행과 같음)
- 2.-----따른-----  
-----
3. 4. (현행과 같음)
- 5.그 밖에-----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  
-----  
-----  
-----다음 해-----  
-----  
-----.

1. (현행과 같음)
- 2.-----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  
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  
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한정한  
다)

3.-----제2호 외-----  
-----  
-----  
-----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흡  
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은-----.